

舊蘇聯의 分裂과 國家相續

- 舊蘇聯의 外債問題를 中心으로 -

李 根 寬

(建國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2. 1991년 10월 28일자 양해각서 |
| II. 국가상속의 개념 | 3. 1991년 12월 4일자 조약 |
| III.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 | 4. CIS 내에서의 외채문제의 대한 협의 |
| IV. 구소련의 분열과 국가상속 유형(범주) | 5. “제로옵션”에 의한 문제의 해결 |
| V. 구소련의 대외채무의 상속문제 | VI. 맺는말 |
| 1. 구소련의 대외채무의 내역 | |

I. 머리말

1991년 12월 8일 백러시아의 수도 민스크에 모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3국의 국가원수들은 민스크선언의 채택을 통하여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과 구소련의 소멸을 선언하였다. 동 선언 제1조에 의하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더 이상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또한 지정학상의 실체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¹⁾ 구소련의 분열 및 소멸은 국제정치 및 경제의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다. 특히 국제법상의 난제로 손꼽히는 국가상속(State succession)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국가실행(State

1 Agreement Establishing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43 (1992). 독립국가연합에 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Moiseev, *Pravopoi status Sodruzhestva Nezavisimyykh Gosudarstv* [독립국가연합의 법적 지위] (1995); Grechko and Shinkaretskaia, “Poniatie konfederatsii i SNG” [국가연합의 개념과 독립국가연합], *Moskovskii zhurnal mezhdunarodnogo pravo* 1994/2, p. 61.

practice)을 제공하고 있다.²⁾ 1990년에 달성된 독일통일과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상속의 실례라 하더라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본고에서는 구소련의 분열로 인하여 야기된 복잡다기한 국제법상의 문제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적지아니한 구소련의 외채의 상속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구소련의 외채문제는 구소련의 분열시점에 있어 서방채권국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먼저 구소련의 분열이 어떠한 국가상속 유형(category or modality of State succession)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는 해체설과 분리독립설이 대립하였는데, 이러한 논쟁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는 러시아 연방이 분열 이전의 소련과 동일성(identity)과 계속성(continuity)을 갖는지의 여부였다. 전통국제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존재론적(ontological)인 지표는 국가상속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과연 구소련의 외채상속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는지를 논하게 고찰할 것이다.

구소련의 외채상속문제에 대한 예비적논의로서 국가상속의 개념과 1983년 국가자산, 문서 및 채무의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이하 “1983년 협약”)에 관한 간략한 고찰을 선행시켰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국가채무의 국가상속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1983년도 협약에서 국가채무(State debt)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국가분열 시 국가채무의 상속 내지 승계문제가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소련의 분열과정에서 구소련의 외채문제가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문제 즉, 구소련의 분열과정에서 외채상속에 관한 국가실행(State practice)을 면밀히 살

2 국가상속이 전통국제법상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19세기 말엽에 영국의 국제법 학자 Hall은 국가상속법에 관련하여 “이 주제에 관한 국제법학자들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논의들은 불완전하며 또한 학자들은 이처럼 불완전한 논의들을 서로 베끼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1st ed., 1880), p. 80. 금세기 초반의 시점에 Stelmachowski 역시 “국가상속의 문제는 국제법상 가장 불분명하고 논쟁이 많은 (les moins élucidés et la plus litigieux) 분야에 속한다”고 하였다. PCIJ Series C 3 vol. 3 (1927), p. 707. 오늘날에 있어서도 Brownlie에 따르면, 국가상속은 “대단히 불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 (an area of great uncertainty and controversy)”이다.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1990), p. 655.

3 1980년대말 이후 구소련 및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화의 여파로 많은 국가승계사례들이 발생하였다. 구소련의 분열과 독일통일 이외에도 체코슬로바키아 및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식민지독립(colonial independence)의 사례로서 나미비아와 에리트리아의 독립, 남북예멘의 통일, 할양(cession)에 해당된다 할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등이 최근의 국가승계사례를 구성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에 관한 상세한 국제법적 논의로는 Malenovsky, “Problèmes juridiques liés à la partition de la Tchechoslovaquie”, 39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1993), p.305; Mikulka, “The Dissolution of Czechoslovakia and th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vol. 12 no. 23 (1996), p. 45 참조.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문제에 대하여는 Mullerson, “The Continuity and Succession of States, by Reference to the Former Soviet Union and Yugoslavia”, 42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93), p. 473; Craven, “The European Community Arbitration Commission on Yugoslavia”, 66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95), p. 33 참조.

퍼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1983년 협약의 관련규정들이 구소련의 분열과정에서 실제로 준수되었는지를 논할 것이며 또한 구소련의 분열과 관련된 국가실행이 국가채무에 관한 국가상속법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II. 국가상속의 개념

국가상속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혼란과 논쟁이 있어왔다.⁴⁾ 국가상속의 개념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쟁점은 이 개념이 영토변경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영토변경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의 법률상의 이전 (succession, devolution)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전자를 가리켜 사실상의 상속 (succession in fact)이라 하고, 후자를 가리켜 법률상의 상속 (succession in law)이라 하기도 한다.⁵⁾

이러한 두 개념 간의 혼동은 급세기의 대표적 국제법학자인 Kelsen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932년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서 행한 일반강의 (General Course)에서 국가상속의 개념이 “영토변경의 사실 자체 즉 특정한 영토 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사실(fait)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상속 또는 승계 (succession)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⁶⁾

국가상속의 개념을 이처럼 영토변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승계까지 포함하여 파악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국가상속의 개념을 사법상의 상속개념 (죽음으로 인한 *causa mortis or post mortem*) 권리·의무의 자동적 승계)과 혼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⁷⁾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국가상속개념과 사법상의 상속개념이 혼동되게 된 데에는 근대 이전의 유럽, 특히 신성로마황제 지역에 있어 국가영토(State territory)가 국왕 내지 영주의 소유지로 관념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국왕 또는 영주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지로 간주되었던 국토가 그 자식들 간에 상속·분배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통상 “*successio regnorum*”, 즉 왕국(내지 국가)상속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 시절(대체로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형성된 국가상속개념과 사법상의 상속개념 간의 관련은 오늘날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상속개념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⁸⁾

1978년과 1983년의 두 비엔나협약의 초안을 마련했던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이러한 개념상의 혼동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으며, 국가상

4 국가상속개념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Lee, "The Law of State Succession in the Post-Decolonisation Period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y and the former Soviet Un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1998), pp. 6-41.

5 Jones, "State Succession in the Matter of Treaties", 24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47), p. 263.

6 "Théorie générale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problèmes choisis", 42 *Recueil des cours* (1932 IV), p. 314.

7 예를 들면, O'Connell, *State Succession in Municipal Law and International Law* vol. 1 (1967), p. 3.

8 국가상속개념의 역사적 진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Lee, *supra* note 4, pp. 7-15.

속의 개념을 영토변경의 사실에 국한하여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⁹⁾ 동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가상속의 정의는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의 측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것”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erritory)이다. 이와 같은 국가상속개념은 1978년조약과 1983년 조약의 본문규정에도 반영되어 “선행국의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상속의 효과”(the effects of a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State)¹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방금 인용한 표현에서 국가상속은 결코 영토변경으로 인한 특정국가의 권리 의무의 자동적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변경의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ILC에 의한 국가상속 개념규정에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국가상속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 자주 사용되던 ‘주권의 변경’(change of sovereignty)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이란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다수의 제3세계국가들이 독립하기 전에 반드시 외국의 주권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지역, 위임통치지역, 보호령 등 다양한 법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¹¹⁾

이 정의는 수정 없이 양 협약에 수용되었으며,¹²⁾ 이 후 이 정의는 국제 재판소 등의 국제적 사법기관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채택되기에 이르렀다.¹³⁾ 본고에 있어서도 국가상속은 양 비엔나 협약에 규정된 의미, 즉 영토변경의 사실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III.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

주지하다시피, 국가상속에 관하여는 두 개의 다자조약이 존재한다. 그 첫째는 1978년 8월 23일에 채택된 조약의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이며,¹⁴⁾ 또 하나는 1983년 4월 8일 채택된 국유재산, 문서 및 국가채무의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이다.¹⁵⁾ 전자는 1996년 11월 6일자로 발효하였으나,¹⁶⁾ 후자는 아직껏 그 발효에 필요한 15개국의 비준을 확보하지 못하여 미발효상태

9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4 II-1, pp. 167-168.

10 1983년협약 제7조.

11 Ibid.

12 1978년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제2호; 1983년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제1호.

13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평화회의에 부속되었던 중재위원회 (일반적으로 Badinter위원회라고 알려짐)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의는 “국제법상 승인된 정의 (the accepted definition in international law)”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의 의견 제1호. 3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1992), p. 1495.

14 협약 원문은 UN문서 A/CONF.80/31 (1978년 8월 22일); 17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992), p.1488.

15 협약원문은 UN문서 A/CONF.117/14 (1983년 4월 7일); 2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1984), p. 3.을 참조.

16 1998년 1월 28일 현재 동 협약의 제약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이집트, 에스토니아, 이티오피아, 이라크, 모로코,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튀니지,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15

에 있다.¹⁷⁾

본고에서는 이 두 협약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약하고,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간략히 이를 다루고자 한다.¹⁸⁾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관한 우리의 논의는 양 협약에 공통된 특징에 대한 논의와 1983년 비엔나 협약 그 중에서도 국가분열 시 국가채무에 관한 조항들에 국한된다.

먼저, 국가상속에 대한 양 협약 체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주지하다시피,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구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이었다. 이들의 독립과 더불어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국제조약의 상속 여부와 국유재산 및 국가채무의 상속 여부가 중대한 실천적·이론적 문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직면하여 국제법위원회는 이미 1949년에 “국가 및 정부 상속”(Succession of States and Governments)을 법전화(codification)대상주제 14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 주제에 대하여 국제법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63년 이후이며,¹⁹⁾ 국가상속에 대한 ILC의 논의는 조약 및 국유재산과 국가채무의 양자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1978년 협약의 초안 준비 작업은 1967년에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영국 출신의 험프리 월독(Humphrey Waldock)에 의하여 그리고 1983년 협약의 마련은 알제리아 출신의 모하메드 베자위(Mohammed Bedjaoui)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국가상속에 대한 양 협약의 공통적 특징은 이들 협약이 신생독립국가(newly independent States)에 대하여 우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양 협약 공히 국가상속유형의 일종으로서, “신생독립국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면, 양 협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범주를 구성한다 할 “신생독립국가”는 협약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양 협약의 제2조에 따르면, 신생독립국가는 “국가상속 발생일 직전에 그 영토가 비독립적 영토로서 당해 영토의 국제관계를 선행국이 책임졌던 상속국가”(a successor State the territory of which,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succession of

개국이다. 제약국의 현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un.org/Depts/Treaty>를 참조.

17 1998년 1월 28일 현재 제약국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등 5개국이다. Ibid.

18 1978년 비엔나 협약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의 것을 참조. O'Connell, "Some Reflections o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39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1979), p. 725; Treviranus, "Die Konventio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Staatensukzession bei Verträgen", Ibid., 259; Meriboute, *La codification de la succession d'états aux traités* (1983); Menon, *The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1991). 1983년 비엔나 협약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의 것을 참조. Streinz, "Succession of States in Assets and Liabilities - a New Regime?", 26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83), p. 198; Natha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Dinstein (ed.), *International Law at a Time of Perplexity*(1989), p. 489.

19 1978년협약에 대한 역사적 개관에 관하여는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4 II-1, pp. 162-167. 1983년협약에 대한 역사적 개관에 대하여는 Ibid. 1981 II-2, pp. 9-16.

States, was a dependent territory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the predecessor State was responsible)이다. 이러한 정의는 허다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이 정의의 핵심을 이룬다 할 “비독립적 영토”(dependent territory)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표현은 서구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위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들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제3세계 이외의 지역 또는 제3세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트해 연안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1940년 소련에 의한 강제병합이 일응 식민지화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국가상속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비독립적 영토에 속하는가? 또한, 에리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제3세계 내의(intra-Third World) 식민지화에 해당한다 할 사례에 있어서도 신생독립국가 개념이 적용될 것인가? 양 협약의 체결 당시 제3세계국가의 대다수가 생각하였던 신생독립국가는 제1세계-제3세계 간의 관계에서 관념되었고,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모호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정형적이었던 탈식민지화사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식민지독립사례가 등장하면서 양 협약상의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개념규정의 불명확성과 부적절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양 협약은 공히 신생독립국가에 대하여 우대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1978년 협약에 따르면, 다른 범주의 국가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행국의 조약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²⁰⁾ 이에 반하여 신생독립국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가에 대하여 조약 승계여부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학자들은 신생독립국가에 대하여 전통국제법상의 “조약비승계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n slate)를 인정했다고 해석한다.²¹⁾ 특히, 다자조약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1978년 협약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신생독립국가는 관련조약에 대한 자신의 지위, 즉 당해조약의 승계 여부를 상속의 통보(notification of succession)에 의하여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3년 협약의 경우에는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우대적 조치가 좀더 강화되어 있다. 국유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신생독립국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우대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²²⁾ 특히 국가채무에 대하여 신생독립국가의 경우 선행국과 승계국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선행국의 국가채무가 승계국에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²³⁾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우대적인 취급이 1983년 협약의 경우에 좀더 현저한 것은 이 협약의 특별보고관이 알제리아 출신의 베자위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자위는 1970년 헤이그 국제아카데미에서

20 ILC의 견해에 따르면, 신생독립국가 이외의 유형(부분적 영토의 변경인 할양)의 경우는 제외)에 있어서는 “the principle of ipso jure continuity”가 적용된다.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4 II-1, 259.

21 Sinclair, “Some Reflections o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in Hakapaa (ed.), *Essays in Honour of Erik Castren* (1979), p. 160.

22 1983년 협약 제15조.

23 Ibid. 제38조 제1항.

행한 강의에서 “식민모국과 그 해외식민지와와의 관계는 ‘식민지 협정’(pacte colonial)이라 불리우는 착취적 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과거 식민지들에 대한 식민모국의 배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²⁴⁾ 양 협약 특히 1983년 협약에 규정된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우대적 취급은 서구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으며,²⁵⁾ 아직까지도 이들 조약이 강한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1983년도 협약상의 국가채무에 관한 규정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국가채무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제33조에서 “선행국가의 여타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법상의 주체에 대한, 국제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발생한 모든 재정상의 의무 (any financial obligation of a predecessor State arising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owards another State,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or any other subject of international law)”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외국의 사인에 대한 채무도 국가채무의 정의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 국가에 대한 채무공여에 있어 다국적은행 등 사적 행위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현금의 국제금융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의 중요성은 쉽게 납득이 될 것이다. 실제로 1983년 협약의 채택과정에서 서구선진제국은 국가채무의 정의에 사적 투자자 (private investor)에 대한 채무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의견은 제3세계국가들의 반대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기타의 국제법상의 주체”라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삽입되기에 이르렀다.²⁶⁾

국가채무에 대한 이러한 개념규정은 국유재산(State property)에 대한 정의와 불균형을 노정한다. 1978년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선행국의 국유재산은 “국가상속이 발생하는 일자에 있어서, 선행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선행국에 귀속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which, at the date of the succession of States, were, according to the internal law of the predecessor State, owned by that State)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국이 제3국 기타 다른 국제법상의 주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및 이익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 및 이익도 선행국의 국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채무 및 국유재산의 개념 및 그 외연상의 불균형도 서구 선진국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구소련의 분열과정에서 과연 외국사인의 채권도 명시적인 형태로 보호되었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이다.

1983년 협약은 국가의 분열을 분리독립 (separation)과 해체(dissolution)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이는 두 유형을 합쳐 “separation of parts of a State”란 단일유형으로 다루었던 1978년 협약과 대조를 이룬다.²⁷⁾ 분리독립과 해체 간의 구별징표는 선행국가의 분열 이후 이 국

24 “Problèmes récents de succession d'Etats dans les Etats nouveaux”, 130 *Receuil des cours* (1970 II), pp. 546, 551.

25 Streinz, *supra* note 18, p. 235.

26 Nathan, *supra* note 18, p. 506; Streinz, *supra* note 18, pp. 212-213.

27 1978년 협약 제34조.

가와 동일성 내지는 계속성을 유지하는 국가가 존속하는가의 여부이다. 최근의 국가상속사례에 있어 특히 구소련의 분열 및 유고슬라비아연방의 분열과 관련하여 그 유형이 분리독립인지 아니면 해체인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바,²⁸⁾ 구소련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국가 분열 시 당해국가의 채무의 상속에 관하여 1983년 협약은 분리독립과 해체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약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하면, 국가의 분열 시, “[선행 국가와 상속국가 간에 또는 상속국가 상호 간에] 합의가 없으면, 선행국가의 채무는 특히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상속국가에 이전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한 비율로 상속국가(들)에 승계된다.”²⁹⁾ 따라서, 국가분열 시 선행국가의 채무승계와 관련하여 제1차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련 국가 상호 간(선행국가와 상속국가 또는 상속국가 상호 간)의 합의이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이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구소련의 분열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본고의 임무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IV. 구소련의 분열과 국가상속유형 (또는 범주)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분열은 다시 분리독립과 해체로 구분된다. 구소련의 분열과도 관련하여 이것이 분리독립 즉,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타 구소련 구성 공화국(union republics)들이 분리독립해 나간 것인지 아니면 해체 즉 어떠한 상속국가도 구소련과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구소련이라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소멸된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³⁰⁾ 전통국제법의 설명에 따르면, 분리독립과 해체 간의 구분은

28 신유고연방(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이 구유고연방과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신유고연방과 부정하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 문제는 단지 상징적인 의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유고연방에 의한 구유고연방의 국제기구회원자격의 상속여부, 기타 국가상속문제, 신유고연방에 대한 새로운 국가승인의 필요 여부 등의 실권적인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신유고연방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부인하는 쪽이었다. 특히 유럽공동체가 소집한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회의에 설치되었던 Badinter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신유고연방은 새로운 국가로서 구유고연방의 유일한 상속국가로 간주될 수 없다(a new State which cannot be considered the sole successor to 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고 판단했다. Conference on Yugoslavia Arbitration Commission Opinion No. 10 (4 July 1992), 92 *International Law Reports*, p. 208.

UN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을 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777호(1992)를 통하여 신유고연방의 구유고연방과 동일성 및 계속성을 부인하고 그 결과 전자가 후자의 UN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9 제40조에 의하면, “unless the predecessor State and the successor State otherwise agree, the State debt of the predecessor State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tate in an equitable proportion,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the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which pass to the successor State in relation to that State debt”. 제41조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30 좀더 엄격한 논의를 위해서는 발트해연안3국의 사례를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사례가 여타 구성공화국의 경우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즉, 다른 구성공화국의 사례가 전통국제법상의 해체 또는 분리독

특히 대외 자산 및 부채 (external property and debts)의 처리 및 국제기구의 회원자격 승계문제 등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즉, 분리독립의 경우에는 선행국가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국가가 존속하는 관계로 이 국가가 대외자산 및 부채에 관한 선행국가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는 데 반하여, 해체의 경우에는 이들 대외자산 및 부채가 상속국가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승계 및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

구소련의 분열과 관련해서도 해체론과 분리독립론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먼저 해체론(theory of dissolution)의 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본고의 허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12월 8일자 민스크 협정 제1조에 구소련의 국제법상의 주체 및 지정화상의 실체로서의 소멸이 명시적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독립국가연합에 의하여 채택된 문건들에서 구소련의 소멸을 시사하는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92년 3월 20일에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평의회(Council of Heads of States of the CIS Member States)가 채택한 결의문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구소련연방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상속국가로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이러한 규정은 러시아연방과 여타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간에 아무런 차등도 두지 않음으로써 구소련의 분열이 해체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분리독립론(theory of separation)의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1991년 12월 21일자 독립국가연합 국가원수회의의 결정이 거론된다. 이 결정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자격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³³⁾ 이에 따라 구소련의 분열 이전부터 국제연합회원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를 제외한 여타의 독립국가연합회원국들은 국제연합에 신규로 가입하였지만, 러시아는 국제연합 내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비롯한 구소련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둘째, 구소련이 체결하였던 다자조약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의 국제연합상임대표는 러시아연방이 이들 조약의 계약당사국으로 승인될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공한은 아무런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³⁴⁾ 셋째, 인구나 면적의

립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데 반하여, 발트연안국가의 경우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고 "부활한 국가(resurrected States)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주장에 따르면, 194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트해연안3국은 불법점령의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1990년 완전한 독립을 회복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국가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국제법상의 근거로는 서방 대다수 국가들이 1940년의 스탈린에 의한 이들 국가의 병합을 법률상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장된다. 실제로 1990년 발트해연안국가들이 "부활"하였음을 주장할 때 서방국가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여 새로운 국가로서의 승인을 행하지 않았다. Verhoeven, "La reconnaissance internationale: declin ou renouveau?", 39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1993), pp. 12-13.

31 Koskeniemi and Lehto, "La succession d'états dans l'ex-URSS, en ce qui concerne particulièrement les relations avec la Finlande", 38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1992), p. 183.

32 *Diplomatskii vestnik* [외교공보] 1992/7, p. 11.

33 31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992), p. 151.

34 UN Doc. LA41 TRV222 Russian Federation.

요소도 러시아 연방의 구소련과의 동일성 내지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러시아 연방의 면적(약 1,700만 평방 킬로미터)은 구소련 총면적(약 2,240만 평방 킬로미터)의 약 76%에 해당하며, 그 인구(약 1억 5천만 명)도 구소련 인구(약 3억명)의 50%를 약간 상회한다. 넷째, 국가의 동일성 또는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토변경에 직접 관련된 국가(즉, 선행국가 및 상속국가)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의 승인과 묵인(recognition and acquiescence)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³⁵⁾ 구소련의 분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는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과 동일성 내지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방국가 대부분에 의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실로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멕시코 등 3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³⁶⁾

결론적으로 구소련분열을 어떤 국가상속유형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분리독립(separation)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전통국제법상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분리독립과 해체간의 구분이 구소련의 대외채무의 처리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V. 구소련의 대외채무의 상속문제

1. 구소련의 대외채무의 내역

구소련의 분열 시 대외자산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구소련의 대외자산은 주로 106개국에 있어서의 231개에 달하는 외교공관 및 영사관건물(133개의 대사관, 92개의 영사관, 6개의 국제기구예의 대표부)과 외국에 대한 청구권(claim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⁷⁾ 구소련의 외국에 대한 청구권의 정확한 규모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견해에 따르면 2,500억 달러로 추산되며,³⁸⁾ 러시아측 계산에 의하면 약 1,400억 달러쯤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⁹⁾

이에 반하여 구소련의 대외채무 규모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대외채무의 총액은 구

35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1979), p. 403; Marek, *Identity and Continu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2nd ed., 1968), pp. 159-160.

36 러시아 연방 외무부 조약국장(Head of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Treaties)인 Knyazeev와 1994년 9월 27일 행한 인터뷰.

37 Tsybukov, "Sud'ba sovetskoi sobstvennosti za rubezhom" [소련 대외자산의 운명], *Mezhudnarochnaia zhizn'* 1994/10, p. 19.

38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법률자문관인 Chalyi박사와 1995년 1월 11일 키예프에서 행한 인터뷰.

39 Tsybukov, "Kto platit po dolgam SSSR" [누가 소련의 채무를 갚을 것인가], *Mezhudnarochnaia zhizn'* 1994 /7-8, p. 107.

소련의 분열 당시 758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336억 달러는 공적 대부자(official creditors)에 대한 중장기채무였으며, 274억 달러는 사적 대부자에 대한 채무였고 128억은 단기외채였다.⁴⁰⁾

2. 1991년 10월 28일자 양해각서

1991년 8월 19일의 쿠데타 실패 이후 구소련의 붕괴는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구소련의 분열에 직면하여 서방의 채권자들의 당연한 관심은 여하한 방법으로 그들이 구소련에 공여한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법적 문서는 1991년 10월 28일에 체결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과 그 상속국가들의 외국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Debt to Foreign Creditors of the Union of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its Successors)이다.⁴¹⁾ 이 문서의 작성과정에는 서방채권국들이 활발히 관여하였는데, 이 양해각서의 핵심조항은 제1조로서 “채약당사자들은 원래의 계약에 대하여 여하한 침해도 없이 [구소련의 대외]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것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을 선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대외무역담당 소비에트은행(Soviet Bank for External Trade)이 당해 외채의 관리자(administrator)로 지정되었다.

동 양해각서의 종결부분에서 채약당사국들은 상호 간에 구소련의 대외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다자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발트해 연안 3국을 제외한 12개국가의 서명을 발효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의 서명거부로 인하여 발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 양해각서가 발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 문서가 어떠한 실제적 중요성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전문에 규정된 “외채”(external debt)의 정의는 외채승계에 관한 후속문서들에 자주 언급되었다.

3. 1991년 12월 4일자 조약

1991년 12월 4일 구소련연방의 대외 국가채무 및 자산의 상속에 관한 조약(Treaty on

⁴⁰ Ibid, p. 103.

⁴¹ 이 문서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 Juillard, “La dette extérieure de l'ancienne Union soviétique: succession ou continuation?”, in Burdeau and Stern (eds.), *Dissolution, continuation et succession en Europe de l'est* (1994), pp. 210-212; Bothe and Schmidt, “Sur quelques questions de succession posées par la dissolution de l'URSS et celle de la Yougoslavie”, 94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992), pp. 832-834.

Succession in respect of External State Debts and Property of the former USSR)이 채택되었다.⁴²⁾

동 조약 제1조에는 조약에서 사용된 여러 용어들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국가상속”, “선행국가”, “상속국가”, “제3국” 등의 용어의 정의는 1983년 비엔나 협약으로부터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의는 1983년 협약상의 “국가채무(State debt)”에 대한 그것과는 중대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1983년 협약은 국가채무의 채권자를 국가, 국제기구 등의 국제법상의 주체로 한정한 반면, 1991년 조약은 구소련의 대외채무를 “구소련이 ... 다른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여하한 외국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모든 재정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강조된 부분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 국제기구 등의 국제법상의 주체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적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구소련의 국가채무의 개념 속에 포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서방채권자들과의 구소련채무의 재조정(rescheduling)을 위한 협상과정에도 반영되었다. 즉, 외국정부를 비롯한 공적 채권자와의 협상은 파리 클럽을 통하여, 상업은행에 대한 채무와 물품공급자 채권(suppliers' credits)에 관한 협상은 런던 클럽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제2조는 15개 구성공화국을 모두 구소련의 상속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련연방이 선행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점은 동 조약이 구소련의 국제법상의 법인격의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 조약의 핵심조항인 제3조에서는 모든 상속국가들이 소련의 대외채무의 상환에 참여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자산의 분배에의 참여는 대외채무의 상환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에의 각 국가별 참여비율이 제4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었다.

러시아	: 61.34%
우크라이나	: 16.37%
백러시아	: 4.13%
우즈베키스탄	: 3.27%
카자흐스탄	: 3.86%
그루지아	: 1.62%
아제르바이잔	: 1.64%
리투아니아	: 1.41%
몰도바	: 1.29%
라트비아	: 1.14%
키르기즈스탄	: 0.95%

42) 이 조약의 원문은 *Deistviushchee mezhdunarodnoe pravo* [실정국제법] vol. 1(1996), p. 476.

타지키스탄 : 0.82%
 아르메니아 : 0.86%
 투르크메니스탄 : 0.70%
 에스토니아 : 0.62%

동 협약 제16조에 의하면, 동 조약은 2개 이상 국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동 조약은 아르메니아, 백러시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와 소련연방의 서명을 확보하였다.

4. CIS 내에서의 외채문제에 대한 협의

상기한 여러 조약 내지는 각서의 채택을 통하여서도 구소련의 외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가 CIS 내에서 진행되었다. 1991년 12월 30일 즉, 구소련이 분열된 직후의 시점에 CIS회원국의 국가원수들이 민스크에 모여 구소련의 대외자산에 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CIS회원국 상호 간에 구소련의 대외자산에 대한 “적절하고 형평한” 지분을 인정하며, 구소련의 대외자산의 분배를 위한 기준 및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국가간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1992년 3월 20일 CIS회원국국가원수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 위원회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일에 이르러 CIS회원국들은 또 다시 구소련의 대외자산의 분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은 다시금 “구소련의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소멸”을 확인하고 구소련의 대외자산을 1991년 12월 4일 조약에 정한 비율로 나눌 것을 규정하였다. 다만, 1991년조약과의 차이는 4.77%를 그루지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에 일괄 배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제로 옵션(nulevoi variant)”에 의한 문제의 해결

CIS 국가 간의 협정의 체결 및 협상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대외채무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은 단독으로 구소련의 대외채무를 인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독립국가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들은 1992년 10월 9일 비쉬넵에서의 협정채택을 통하여 구소련의 대외채무에 관한 문제를 양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10개국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대외자산과 대외채무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⁴³⁾ 이러한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구성공화국(union republics)들이 구소련의

대외채무 및 대외자산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러시아에 양도하고 러시아는 이를 양수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약의 체결 및 집행을 통하여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의 대외자산 및 대외채무의 유일한 권리자 및 채무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1993년 2월 8일자 소련의 대외자산에 관한 대통령명령에 규정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은 소련의 계속국가(continuator-State)로서 소련의 대외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들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이 명령은 대외자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양자적 방식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⁴⁾

러시아의 제로 옵션정책은 서방채권국가에 의하여도 지지를 받았다. 1993년 4월 2일의 서방채권국의 정부들이 채택한 공동선언(Common Declaration)에 따르면, 구소련의 대외채무문제는 “러시아 연방과 여타 구소련의 상속국가 간의 양자조약에 의하여, 또한 채권국과의 합의하에” 처리되어야 한다.⁴⁵⁾

구소련의 대외채무처리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일관된 입장은 자신이 구소련의 대외자산과 대외채무의 분배에 러시아연방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로 옵션정책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타의 독립국가연합이 러시아 연방과 이 문제에 관한 양자조약의 체결을 종료했을 때에도 우크라이나는 이의 체결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러시아 정부의 압력으로 1994년 12월 9일에 이르러 우크라이나도 유사한 내용의 양자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1997년 7월말 현재, 동 조약은 우크라이나 의회에 의하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제로 옵션정책은 이미 기정사실(fait accompli)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⁴⁶⁾

실제로 서방채권자들과의 구소련 대외채무에 관한 협상은 러시아 단독으로 진행되어, 외국 정부채권자와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1997년 10월에는 상업은행들로 구성된 런던 클럽과 약 33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25년간 지불연장에 관하여도 합의하였다. 이제 1998년에 50억 내지 60억 달러에 달하는 공급자 채권에 관한 합의만 도출하면, 대외채무 전체에 관한 재조정을 달성하게 되며, 구소련의 대외청구권의 행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⁴⁷⁾

43 Tsybukov, *supra* note 39, p. 107.

44 *Sobranie ukazov Prezidenta Rossiiskoi Federatsii I postanovlenii Pravitel'stva*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및 정부결정집] 1993 no. 7, p. 560.

45 Juillard, *supra* note 41, p. 222.

46 우크라이나 외무부 조약국장인 Krohmal씨와 1997년 7월 30일 Kiev에서 행한 인터뷰.

47 *Financial Times* (1997년 10월 20일), p. 2.

VI.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구소련의 분열과 그에 따른 대외채무의 상속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분열과 같이 원심적(centrifugal)인 영토의 변경은 통일 등과 같은 구심적(centripetal)인 영토변경보다 복잡다기한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구소련의 대외채무도 상속국가들의 연대책임에서 상속국가들 간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분배에서 다시 러시아 연방에 의한 단독인수라는 다양한 정책상의 변천을 통하여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행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채무의 개념 속에 사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구소련의 대외채무 처리과정에서는 사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국가채무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날로 증대되는 사인채권자의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소련의 대외채무의 처리의 전과정을 통하여 채권국들이 깊이 관여하였고 실제로 협상결과에 대하여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1991년 10월 28일자 양해각서는 G-7국 정부대표들의 참석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 점은 1983년 비엔나협약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과 증대한 차이를 노정하는 것이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처리에 관한 합의는 선행국가와 상속국가 간 또는 상속국가 상호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어서는 증대한 이해관계국의 하나인 채권국들의 활발한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상속법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는 형식적인 또는 존재론적(ontological)인 지표나 범주 즉, 동일성(identity), 계속성(continuity), 또는 국가상속유형(modality of State succession)에 과대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구소련의 대외채무문제에 대한 협상과정은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은 외국채권자들의 채권의 안정성확보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공화국들의 세계금융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이라는 기능적(functional)인 목표에 비하여 다분히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따름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상속법의 개념이 "한 국제법주체로부터의 다른 국제법주체로의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하는 다분히 존재론적인 개념에서 "영토의 변경 후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평화적이고 형평한 조정"이라는 기능적 개념으로 변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Moiseev, E. G, *Pravovoi status Sodruzhestva Nezavisimyykh Gosudarstv*
[독립국가연합의 법적 지위], 1995.
- Brownlie, Ian,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Malenkovsky, Jiri, "Problèmes juridiques liés à la partition de la Tchechovakie", 39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1993.
- Mikulka, Vaclav, "The dissolution of Czechoslovakia and th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vol. 12 no. 23 (1996).
- Mullerson, Rein, "The Continuity and Succession of States, by Reference to the Former
Soviet Union and Yugoslavia", 42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1993.
- Craven, Matthew, "The European Community Arbitration Commission on
Yugoslavia", 66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95.
- Lee, Keun-Gwan, "The Law of State Succession in the Post-Decolonization Period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y and the former Soviet Unio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1998.
- O'Connell, D. P, *State Succession in Municipal Law and International Law*, 2 vo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O'Connell, D. P, "Some Reflections o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39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1979.
- Mériboute, Zidane, *La codification de la succession d'états aux traités*, Presse
universitaire française, 1983.
- Streinz, Rudolf, "Succession of States in Assets and Liabilities - A New Regime?", 26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83.
- Nathan, Eli,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Dinstei, Yoram (ed.), *International Law at
a Time of Perplexity*, 1989.
- Sinclair, Ian, "Some Reflections on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in Hakapaa (ed.), *Essays in Honour of Erik Castren*,
1979.

- Bedjaoui, Mohammed, "Problèmes récents de succession d'états dans les états nouveaux", 130 *Recueil des cours*, 1970.
- Verhoeven, Joe, "La reconnaissance internationale: déclin ou renouveau?", 39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1993.
- Crawford, James,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Marek, Kryztyna, *Identity and Continuity in Public Interantional Law*, 2nd ed., 1968.
- Juillard, Patrick, "La dette extérieure de l'ancienne union soviétique: succession ou continuation?", in Burdeau and Stern (eds.), *Dissolution, continuation et succession en Europe de l'est*, 1994.

Summary

The Break-up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tate Success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external debt

Lee, Keun-Gwan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State practice relating to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external debt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xamining its implications for the law of State succession in general.

The article begins with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State succession. After briefly examining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I have carried out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definition of State succession as adopted by the two Vienna Conventions on Succession of State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State succession means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erritory".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State succession is followed by that of the two Vienna Conventions on the subject of State succession, i.e. the 1978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and the 1983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State Debts("1983 Convention"). After analysing one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nventions, i.e. preferential treatment of newly independent States, I examined a few provisions of the 1983 Conven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present article, e.g. the definition of State debt and the typology of various categories of State succession.

I have then discussed one of the most hotly debated questions relating to the break-up of the former Soviet Union, i.e. how to categorize the Soviet break-up. Two opposing theories have been proposed: the theory of dissolution and the theory of separation.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two theories consists in whether the Russian

Federation remains identical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Now there is general support for the theory of separation. In resolving the problem, the factor of recognition by third States played a prominent role.

The settlement of external debts of the former Soviet Union was a very convoluted process. According to the first document on the question, i.e.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28 October 1991, all union republics assumed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y for external debts of the Soviet Union. The princip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as discarded by the Treaty of 4 December 1991. Instead, the debt was divided among all union republics. Faced with substantial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is solution, the Russian Federation and other union republics adopted a more simple approach, i.e. the assumption of all external debts and property of the Soviet Un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This policy was implemented through the conclusion of a series of bilateral treaties between Russia and other successor States excluding the Baltic States.

The survey of State practice relating to the break-up of the former Soviet Union shows that provisions of the 1983 Convention were not fully adhered to in actual practice. In particular, in contradistinction to Article 33 of the 1983 Convention, State debt as understood by Russia and other States included that owed to private creditors. The survey also shows that the "ontological" criteria such as identity, continuity or the modality of State succession "played second fiddle" to the functional ne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western creditor States and their nationals. This suggests the transformation of the notion of the law of State succession from "succession by one international legal person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other international legal person" to "the peaceful and equitabl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rights and obligation after territorial change".